

#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과업내역서(계약조건)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폐기물(폐합성수지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)을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위탁하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성동구청장(이하 “발주기관”이라 칭한다)과 폐기물 처리업체(이하 “계약상대자”이라 칭한다)의 계약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1. 폐기물 처리

### 가. 폐기물 처리 공정

폐기물(폐합성 폐기물) 계약체결 ⇒ “발주기관”은 수송차량으로 “계약상대자”의 최종처리 장소로 수송 ⇒ “계약상대자”는 폐기물 선별 및 파쇄·소각·재활용품 제조 등 적정 처리 ⇒ “계약상대자”는 반입증명 자료 첨부하여 처리비용 청구 ⇒ “발주기관”은 처리비 지급

### 나. 운송 및 처리조건

-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의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수송하고, 수송비용은 “발주기관”에서 부담한다.
- “발주기관”이 수송하는 폐기물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전량 수용하며, 타업체의 폐기물에 우선하여 “발주기관”의 폐기물을 반입·처리한다.
- 단, “발주기관”으로부터 수송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“계약상대자”의 사정상(공장 가동중단, 야적장 협소 등)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 통보에 의하여 일정기간(1주일 이내) 반입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- 연간 단가계약의 처리물량은 예정량이며, 처리물량이 예정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고 총량으로, 처리물량 초과 시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처리한다.

## 2. 권리의무 양도

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폐기물의 최종처리를 타업체에 재위탁하지 못하며,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 청구 금지 등 성실의무 이행을 다 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때는 “계약상대자”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
나. “계약상대자”가 최종처리 계약기간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“발주기관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3. 최종 처리비용 청구

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월 단위로 소정의 서류 구비하여 “발주기관”에게 청구한다.

나. “계약상대자”가 “발주기관”에게 처리비용 청구시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처리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·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

## 4. 연간 단가계약 기간

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,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다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약 체결시까지 본 연간 단가계약으로 폐기물을 최종 처리한다.

## 5. 계약 위반시 조치

계약당사자인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최종 처리하며, “계약상대자”의 사정으로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“발주기관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의 미이행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무 불이행조치로 “계약상대자”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
2014. 12.

작성자 : 행정7급 이 승 근 (인)

확인자 : 청소행정과장 박 사 채 (인)